

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(2018.1.26.)에 따른 예시답안 수정

시행령 제4조(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)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<u>100분의 5</u>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--

1. 민법계약(18년 3-5월)강의 예시답안 p.124 위에서 두번째 줄

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9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→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2. 민법계약(18년 6-9월)강의 예시답안 p.124 위에서 두번째 줄

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9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→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3. 마무리 일일특강(18년 7월) 이론정리 p.72 위에서 두번째 줄

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9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

→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